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 부여군

내 용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1)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건설주식회사의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4,04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납부기한 2017. 4. 14.)하였는데도, 납부기한일(2017. 4. 14.)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2017. 11. 15. 감사일 현재까지도

-
- 1)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납부되지 않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3건 11,064,650원이 납부기한일로부터 4~7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납부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의 야적정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9,480,8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납부기한 2017. 9. 25.)하였는데도, 납부기한일(2017. 9. 25.)로부터 51일이 경과된 2017. 11. 15. 감사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주)○○의 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협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6,67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납부기한 2016. 12. 9.)하였는데도, 납부기한일(2016. 12. 9.)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2017. 11. 15. 감사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8건 123,886,670원이 납부기한일로부터 2~11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납부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주식회사 ○○○○의 산지전용협의 시 창업공장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였으나, 산지전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661,5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납부기한 2016. 11. 28.)하였는데도, 납부기한일(2016. 11. 28.)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2017. 11. 15. 감사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다.

[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내역

기 관	인허가내용	수허가자	고지서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원)	행정처분일
	합 계				211,093,800	
	소 계				11,064,650	
아산시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부지조성	○○건설 주식회사	2017. 3. 15.	2017. 4. 14.	7,304,040	2017. 3. 6.
	농가주택	○○○	2017. 6. 20.	2017. 7. 20.	825,550	2017. 6. 15.
	진입도로	○○체협 ○○휴양마을	2017. 5. 15.	2017. 6. 15.	2,935,060	2017. 3. 31.

기 관	인허가내용	수허가자	고지서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원)	행정처분일
공주시	소 계				69,480,890	
	야적정 부지 조성	○○○	2017. 8.24.	2017. 9.25.	69,480,890	2017. 8.18.
천안시	소 계				123,886,670	
	공장	(주)○○	2016.11. 9.	2016.12. 9.	156,670	2016.11. 9.
	구룡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도시개발조합	2017. 4.14.	2017. 7.13.	89,776,350	2017. 1.11.
	구룡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 도시개발조합	2017. 5.12.	2017. 7.13.	27,640,100	2017. 1.11.
	배수관설치	○○○	2017. 7.14.	2017. 8. 4.	774,940	2017. 7.14.
	공장	○○코리아(주)	2017. 5.21.	2017. 8.11.	959,450	2016.11.22.
	공동주택	○○○투자개발	2017. 7.12.	2017. 8.11.	2,127,130	2017. 7.12.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산업	2017. 6.20.	2017. 9.29.	1,073,170	2016.11.22.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 활시설	○○○	2017. 7.20.	2017. 9.22.	1,378,860	2017. 4. 5.
부여군	소 계				6,661,590	
	창업공장	주식회사 ○○○○	2016.10.28.	2016.11.28.	6,661,59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 부여군수는

[시정] 미납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11,093,800원(아산시 11,064,650원, 공주시 69,480,890원, 천안시 123,886,670원, 부여군 6,661,590원)을 징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